##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0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이재관·김남근·김승수

복기왕 • 박지원 • 송재봉

문금주 • 이광희 • 문진석

이정문 · 황정아 · 부승찬

황명선 • 이상식 • 정준호

오세희 · 김용만 · 인요한

강준현 • 윤종군 • 박희승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이라 함)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설치된특별회계로, 2019년에 5년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황임.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부장 산업의 육성·보호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추가로 지정된 특화단지 5곳에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시행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 원이 필요하므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 폐 지가 필요함.

이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소부장산업의 전략기술 육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급망 확보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 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859호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부칙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	<u>&lt;</u> 삭 제>		
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			
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